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9. 5.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개정이유

우리 구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 할인을 통하여 승용차 요일제 참여의 향상, 재래시장의 활성화, 공직선거 선거인 투표참여의 촉진 및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5·18민주유공자에 대해 이용요금 경감규정을 신설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중 비고 내용 제14호를 제19호로 변경

나.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중 비고 내용 제15호를 제14호로 하고 할인을 상향(20% → 30%)

다.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중 비고 내용 신설

- 1) 재래시장 인근 100m 이내 공영주차장은 시장상인 및 이용고객의 영수증 및 시장상인회가 발행한 주차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
- 2) 공직선거를 마친 선거인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할인
- 3) 다둥이행복카드를 제시한 경우 당해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
-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50%를 경감한다.

### 3. 개정근거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
- 다둥이 행복카드 방침 :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493호(2006.11.24)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6. 기 타

- 가. 입법예고 : 2009. 3. 26 ~ 2009. 4. 15(제출된 의견 없음)
-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9. 4. 30)
-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라.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비고란 중 “제14호”를 “제19호”로 하고, “제15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호 중 “20%를 할인해 주어야 한다”를 “30%를 할인한다”로 하고,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에 인접한 공영주차장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공영주차장은 시장상인 및 이용고객이 영수증 또는 시장상인회가 발행한 주차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16.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3개월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할인한다. 다만, 민간에 위탁한 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
17. 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로서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정(단,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18.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50%를 경감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은 종전의 요금을 적용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2조제1항 관련) - 비 고 -</p> <p>1. ~ 13. (생 략)</p> <p>14. (생 략)</p> <p>15. 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월·화·수·목·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를 스스로 쉬게 하는 시민제도)를 이행하기 위해 차량에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급지별 당해 주차요금의 <u>20%</u>를 할인해 주어야 한다(1급지, 5급지 소재 주차장은 제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lt; 신 설 &gt;</p>	<p>[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2조제1항 관련) - 비 고 -</p> <p>1. ~ 13. (현행과 같음)</p> <p>19. (현행 제14호와 같음)</p> <p>14. 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월·화·수·목·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를 스스로 쉬게 하는 시민제도)를 이행하기 위해 차량에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급지별 당해 주차요금의 <u>30%</u>를 <u>할인한다</u>(1급지, 5급지 소재 주차장은 제외).</p> <p>15. 「<u>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u>」 제19조에 따른 재래시장의 <u>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에 인접한 공영주차장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공영주차장은 시장상인 및 이용고객이 영수증 또는 시장상인회가 발행한 주차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u></p>

현행	개정안
<p data-bbox="560 322 730 360">&lt; 신설 &gt;</p>	<p data-bbox="791 322 1414 860">16.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3개월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할인한다. 다만, 민간에 위탁한 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p>
<p data-bbox="560 943 730 981">&lt; 신설 &gt;</p>	<p data-bbox="791 943 1414 1234">17.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로서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정(단,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p>
<p data-bbox="560 1317 730 1355">&lt; 신설 &gt;</p>	<p data-bbox="791 1317 1414 1912">18.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50%를 경감한다.</p>